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6
----------	-----

제출일자 : 2014. 3.

제 출 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으로 군세 감면 조례와의 감면액을 통일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정비(안 제13조)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조항이동에 따른 관련 인용 규정 정비(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제125조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3. 5. ~ 3. 25.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3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시세와 군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제16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을 “제1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48조”를 “영 제127조”로 한다.

제19조 중 “제96조”를 “제180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3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 1. ----- ----- : ----- <u>150원</u> 2. ----- ----- : -- ----- <u>500원</u> ② (생략) 1. <u>시세와 군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u> 2. <u>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u> 제16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② (생략) 제17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1. ----- ----- : ----- <u>300원</u> 2. ----- ----- : ----- ----- <u>700원</u> ② (현행과 같음) 1. <u>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u> 2. <u>시세와 군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u> 제16조 【감면신청 등】 ① ----- ----- ----- ----- 제126조제1항 ----- ----- ----- ----- ----- -----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감면자료의 제출】 ----- ----- ----- ----- ----- 영 제127조 ----- -----

제 19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9조 【중복감면의 배제】 ----- ----- ----- ----- 제180조 -----.
--	--

참고 1 상 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매년 1월 31일 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15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7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시세와 구·군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참고 2

자동계좌이체 감면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 감면조례 개정에 의한 감면액 추계

1. 2013년 자동이체 신청자 감면 추계액 (단위 : 건, 천원)

2013년 자동이체 감면			조례 개정후 감면 예정액	차 액 (추계액)	비고
세 목	건 수	금 액			
계		5,171	5,292	121	
등록면허세 (2014년)	272	82	82	0	시세
자동차세	5,040	1,391	1,512	121	시세 병기
재 산 세	9,142	2,743	2,743	0	시세 병기
주 민 세	3,184	955	955	0	시세 병기

2. 2013년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자 감면 추계액 (단위 : 건, 천원)

2013년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감면			조례 개정후 감면 예정액	차 액 (추계액)	비고
세 목	건 수	금 액			
계		574	577	3	
등록면허세 (2014년)	8	5	5	0	시세
자동차세	215	147	150	3	시세 병기
재 산 세	427	299	299	0	시세 병기
주 민 세	176	123	123	0	시세 병기

3. 조례개정 후 감면 추계 결과 : 124천원 정도 감면액 증가

가. 시세 감면 조례 개정(2013. 3)으로 시세가 병기되는 세목은 개정된 세액으로 감면됨

- 자동이체 신청자 : 150원 → 300원
-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자 : 500원 → 700원

나. 시세가 병기되지 않는 자동차세(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등)는 군세 감면 조례로 감면함 : 시세 감면 조례 감면자와의 차액 발생

- 화물·승합자동차 자동이체 감면 신청자 : 805명 × 150원 = 120,750원
- 화물·승합자동차 전자송달 감면 신청자 : 18명 × 200원 = 3,600원

다. 군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시세가 병기되는 세목의 감면액은 변함이 없고, 군세만 부과되는 세목에서 124천원 정도 감면액 증가가 예상됨

4. 감면 추계

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자동이체 신청 평균 증가율 : 1.38% 증가

나. 향후 3년간 자동차세 자동이체 감면액 증가추계

- 2014년 : 124천원 × 1.0138 = 125천원
- 2015년 : 125천원 × 1.0138 = 127천원
- 2016년 : 127천원 × 1.0138 = 128천원

작성자 : 세무6급 이성환

참고 3

최근 3년간 자동계좌이체 감면액

최근 3년간 자동이체 감면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7,109	2,538	17,177	2,577	17,649	5,278
주민세	3,177	476	3,149	472	3,184	955
자동차세	4,904	707	4,890	734	5,040	1,538
재산세	8,697	1,305	8,866	1,330	9,142	2,743
등록면허세	331	50	272	41	283	42

※ 2013. 3. 11.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감면세액 증가